

상 고 이 유 서

원고(상 고 인) 이 기 남

피고(피상고인) 서울관악구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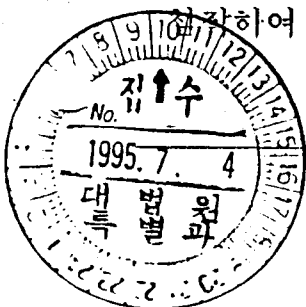
다 음

1. 원심은 노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습니다.

가. 법령관계의 검토

- (1)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노령수당을 지급할 시기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2)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



원본대조필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성재빌딩 6층) • 대표전화 : 525-3660 • 팩스 : 525-3663

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노령수당의 지급수준에 관하여 같은조 제1항에서 “노령수당의 지급수준은 노인복지등을 참작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는 노령수당의 지급기간에 관하여 “노령수당은 노령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노령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노령수당제도의 신설취지

정부는 1989. 12. 30. 법률 제4178호로서 기존의 노인복지법을 전면개정하여 노령수당제도를 신설, 시행하였습니다. (참고자료 법령연혁집 831, 831-1) 여기서 소위 “노령수당” 제도는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해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비록 당해 노인들이 아무런 기여금을 각출하지 않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의 일환으로서 “무각출노령연금제도”로 기능하도록 신설된 제도입니다.

다만 정부는 위와같은 노인복지법의 전면개정시에 정부 예산부담을 고려하여 65세 이상의 자 중에서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지급수준, 지급시기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전면적인 “무각출노령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수요를 조절하고자 한 것입니다.

나. 원심판결의 검토

원심은 노인복지법 제13조 등의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노인복지법 제13조에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서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

원본대조필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성재빌딩 6층) • 대표전화 : 525-3660 • 팩스 : 525-3663

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관계 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국가의 예산사정상 당장에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우선은 65세 이상의 자 중 매년 예산확보상황과 대상자의 소득수준등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급 대상자의 연령과 범위 및 지급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와같은 취지에서 동시행령 제17조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 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도 지급대상자의 최저연령도 65세 보다 높여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94 노인복지사업지침에서 법령상의 65세 기준을 70세로 높여 규정한 것은 같은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원심판결의 위법성

그러나, 원심은 노령수당제도를 규정한 법 제13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습니다.

- (1)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노령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연령범위를 "65세 이상"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노령수당의 지급시기와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원본대조필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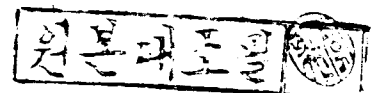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성재빌딩 6층) • 대표전화 : 525-3660 • 팩스 : 525-3663

(가) 위 법률 규정의 어디에도 65세 이상의 자 중 연령 기준의 범위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이를 위임한 규정은 없으며, 이는 문리해석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노인 중에서 "65세 이상"에게만 그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중에서 일정한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자들에게 소정의 노령수당을 지급할 것임을 제도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과 같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지급대상자의 연령기준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동법상의 노령수당제도는 그 본질적인 부분인 연령기준이 입법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건사회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발표하는 대상자 연령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좌우됨으로써 제도 본래의 취지가 형해화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 또한 원심은 정부예산 사정상 당장에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65세 이상의 자 중 지급대상자의 연령까지도 매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정부예산의 필요상 전면적인 노령수당제도가 시행되기전의 과도기적인 제한은 "대상자선정기준"(선별주의 제도 채택)과 "지급수준"을 변경,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어서 이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법률상 보장되고 있으므로 법령상 연령기준까지 상향조정할 필요를 예정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이부분 해석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성래빌딩 6층) • 대표전화 : 525-3660 • 팩스 : 525-3663

(2) 또한 원심이 동법시행령 제17조 역시 “소득수준 등”의 표현상 소득수준 외의 사실도 전제하여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지급대상자의 연령도 65세보다 높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 역시 위법합니다.

(가)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는 1)제목상으로도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로 규정되어 있고,

2) 문면을 검토하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는 —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위 규정의 주어는 “지급대상자”이고 술어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한다.”고 함으로써 위 규정이 소득수준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제한과 이에 따른 위임근거를 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3) 위 규정에서 ‘일정 소득이하의 자’에 대한 수식어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인데 여기서 보건사회부장관은 노령수당의 수령권자로서의 ‘일정소득 이하의 자’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 위임범위는 ‘65세 이상의 자중 소득수준을 참작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위임된 범위는 ‘일정소득이하의 자’의 결정에 관한 것일 뿐 위 규정상으로는 ‘연령을 상향조정하여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권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위와같은 해석은 명백히 위법한 것입니다.

(나) 뿐만 아니라 동법시행령 제20조의 노령수당의 지급수준에 관한 규정은 원래 노인복지법 제13조 제2항에 명문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동 규정에서 “대

원본대조필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성재빌딩 6층) • 대표전화 : 525-3660 • 팩스 : 525-3663

상자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부예산상의 필요에 따라 노령수당의 지급액수를 보건사회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자의 본의를 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같은 취지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노인복지법 제13조나 동법시행령 제 17조는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의 연령의 범위를 보건사회부장관이 매년도마다 결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94 노인복지사업지침에서 법령상의 65세 기준을 70세로 높여 규정한 것은 같은법 및 동 시행령상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법령에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급대상자의 요건인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요건을 훨씬 더 강화하여 “70세 이상”으로 이를 정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며 이부분은 당연히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임이 분명한 이사건에서 피고가 위와같은 무효인 위 지침을 근거로 원고에게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에서 제외한 본건 처분은 위법하여 의당 취소되어야 하겠습니다.

2.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은 법령의 해석, 적용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의당 파기되어야 하겠습니다.

원본대조필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성재빌딩 6층) •대표전화 : 525-3660 •팩스 : 525-3663

첨 부 서 류

1. 변형인혁집(pp 831-833-1)

1995. 7. 3.

위 원고(상고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찬 진



대법원 특별 제2부 귀중.

원본대조필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성재빌딩 6층) •대표전화 : 525-3660 •팩스 : 525-3663

老人福祉法

沿革

公布 番號	3453	公布 日子	1981. 6. 5	題名	老人福祉法
〔新規則制定〕					
醫藥技術의 발달과 文化生活의 向上으로 平均壽命이 延長되어 老人人口의 絕對數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産業化, 都市化, 核家族化의 進進에 따라 老人問題가 점차 큰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社會의 傳統的 家族制度에 緣由하고 있는 敬老孝親의 美風良俗을 維持·發展시켜 나아가는 한편 老人을 위한 健康保護와 施設의 제공등 老人福祉施策을 효과적으로 推進함으로써 老人의 安樂한 생활을 복돋우어 주며 나아가 社會福祉의 增進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每年 5월에 敬老週間을 設定하여 敬老孝親의 思想을 양양하도록 함. ②老人의 福祉를 위한 相談 및 指導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市·郡·區에 老人福祉相談員을 둘 수 있도록 함. ③保健社會部長官,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 또는 市長·郡守(福祉實施機關)는 65歲이상인 老人으로서 身體·精神·環境·經濟的 理由로 居宅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者를 老人福祉施設에 入所시키거나 入所를 委託하도록 함. ④福祉施設機關은 65歲이상인 老人에 대하여 健康診斷 또는 保健教育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⑤65歲이상인 老人에 대하여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輸送施設 기타 公共施設 및 民間서비스事業의 利用料을 無料로 하거나 割引優待할 수 있도록 함. ⑥老人福祉施設을 養老施設·老人療養施設·有料養老施設 및 老人福祉센터등으로 구분하고 養老施設 및 老人療養施設은 無料와 實費施設로 구분함. ⑦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福祉施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老人福祉施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⑧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福祉施設에 대하여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費用을 補助할 수 있도록 함.					
公布 番號	3755	公布 日子	1984. 12. 15	題名	行政審判法

(一部改正)

老人福祉法を代換하여 行政審判法を制定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整備하려는 것임.

公布 番號	4178	公布 日子	1989.12.30	題名	老人福祉法改正法律
----------	------	----------	------------	----	-----------

(全文改正)

老人問題가 심각한 社會問題로 擡頭됨에 따라 老人福祉의 增進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制度를 補完·改善하려는 것임.

①老人福祉對策에 관한 國務總理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老人福祉對策委員會를 設置함.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65歲以上의 老人에 대하여 老齡手當을 支給할 수 있도록 함.

③老人福祉施設의 範圍에 새로이 實費養老施設, 有料老人療養施設 및 老人福祉住宅을 추가함.

公布 番號	4633	公布 日子	1993.12.27	題名	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
----------	------	----------	------------	----	------------

(一部改正)

經濟行政規制緩和施策의 一環으로 民間企業體나 개인도 有料老人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現行規定상 未備點을 개선하여 老人福祉事業의 효율성을 높여려는 것임.

①社會福祉法人이 아닌 民間企業體나 개인도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有料老人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②在家老人福祉事業의 종류를 家庭奉仕員派遣事業, 查問保護事業, 短期保護事業으로 명시하고, 사업실시의 法的 根據를 마련함.

③行政處分の 상대방 또는 代理人에게 意見陳述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聽聞節次를 規定함.